

第254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6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6月24日(金)  
場 所 第3會議場(145號)

議事日程

- 1.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審査된案件

- 1.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 2.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6
-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3

(16시40분 개의)

○위원장 이강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전춘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강래 안홍준 위원님께서 늦게 보임해 오셨는데 지금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6월 7일 이후에 본회의 기간과 상임위 기간을 가리지 않고 조금 전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결과 마침내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관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기로 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6시43분)

○위원장 이강래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당법및정치자금법소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상열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을 따로 합니까?

○위원장 이강래 정당법만 먼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상열 정당법및정치자금법소위원장 이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강래 위원, 구노회 위원, 이화영 위원, 고흥길 위원, 안홍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7일, 10일, 13일, 17일, 21일, 23일, 24일, 총 7차에 걸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치개혁협의회가 보고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적으로 필요하여 추가로 논의를 요청한 사항, 그리고 각 당에서 추가로 제안한 사항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내용을 정당법에 포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 공개와 홍보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의 시·도당에 두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총 100인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당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당의 시·도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자치구 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하였고,

다섯째, 정당의 정책 정당화를 위해 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연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해 주신 정당법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제항 위원님!

○우제항 위원 지금 말씀하신 37조 당원협의회 규정인데요, “정당의 시·도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또는”이라고 하면 선택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구는 “또는”이 아니라 “및”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강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상열 위

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상열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일부 해석을 행정구역 단위로만 둘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회의원선거구별로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취지는 시·군·구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구 단위의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규정은 “및”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이상열 글썄, 용어가…… 어떻습니까?

○이화영 위원 취지는 그러합니다. 취지는 시·군·구 당원협의회도 둘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구별 당원협의회도 둘 수 있고 읍·면·동 단위의 당원협의회도 둘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아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표현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우제항 위원 “또는” 하면 선택사항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동시에 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및”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경험도 많으실 것이고 또 선관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우제항 위원 취지는 다 둘 수 있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기수 다 둘 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및”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그러면 그렇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위원 위원장님,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소위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이라든지 정개혁의 ‘정개혁위에 드리

는 호소'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지역 당원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정을 좀 설명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정당법에 의해서 당원협의회를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두지 않고 시·군·구 단위로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뭐냐 하면, 현행 정당법에도 정당이 당원협회의 단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협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에서 시·군·구 단위의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 시·군·구 및 국회의원선거구 및 읍·면·동에도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행 입법취지를 명료하게 법문화하자는 차원에서 넣는 것이지, 오늘 언론에 일부 잘못 알려진 것이나 지금 정개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당 부활의도를 가지고 우리 소위가 이 부분을 슬그머니 넣었다, 이것은 상당한 오해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화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권경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원협의회 구성 유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 지역구가 동일한 경우하고, 그다음 1개의 시에 2개의 지역구가 있는 경우, 3개 내지 4개의 시·군을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구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3항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의 시 밑에 2개의 지역구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는 갑·을이 있습니다. 진주시 당원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고 진주 갑 당원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는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 가능합니까?

○**소위원장 이상열**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당원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고 갑·을별로도 설치할 수 있

다……

○**소위원장 이상열** 예, 가능하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인기 위원** 3개월 때는 각 군별로 둘 수도 있고 전체로도 둘 수 있고……

○**소위원장 이상열** 예.

○**이화영 위원** 지구당적 성격을 갖는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조직이……

○**위원장 이강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이대로 통과가 되면 실제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생겨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유권해석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권해석이 옳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노회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기정 위원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답변을 하신 대로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상으로도 당원협의회를 임의로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고 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16대 국회에서 지구당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사무소도 두지 못하게 했고 지구당 6급 사무원도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지역에 가면 뭐가 있는냐? 250여 개의 지역구에 가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무소에는 유급 직원을 5명까지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또 후원회 사무실도 별도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당원협의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될 경우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는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사무실이 있고 당원협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급 사무원이 5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구당 사무실이 있는 것과 지구당 유급 사무원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의도가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에게만 지구당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래** 노회찬 위원님, 질의를 선관위 사무총장님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노회찬 위원** 아니, 여기…….

○**소위원장 이상열** 물론 그렇게 유추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 소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화영 위원께서도 보충설명을 한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도 정당이 임의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항을 이렇게 명문화해서 세분화한 것은 해석상 꼭 행정구역 단위로만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별로도 둘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다소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정 위원** 그와 관련된 질의인데, 현재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유급 직원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이화영 위원** 둘 수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 둘 수가 있지요? 그런데 비용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법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상열** 그 점에 대해서는 이화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화영 위원**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고 그 유급 사무원에 대해서 급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당법에 정당의 유급 사무원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정당의 유급 사무원은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로 개념을 규정하면서, 차제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유급 사무원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현행법에는 유급 사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부분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고, 또 유급 사무원의 개념도 정당의 유급 사무원의 개념에 맞춰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15일 이상 근무한 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 하시고 고흥길 위원님 순으로 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37조3항에 보면 주어가 “정당의 시·도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당을 빼놓은 이유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이 자유로운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굳이 “시·도당은” 이렇게 주어를 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위원장 이강래** 표현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주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만 하면 시·도당에서만 설치하고 중앙당은 설치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당에서 하든 시·도당에서 하든 그것은 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주어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강래** 이상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상열** 그 부분은 김기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앙당이 들어가는 게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용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따져보지 못했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고흥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흥길 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소위

에서 논의를 할 때 이게 무슨 현역 의원에 대해서 페이버(favor)를 준다거나 특전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현역이 아닌 분들에 대한 배려에서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해체하면서 과거의 원외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타이틀이나 활동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정당협의회가 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정당협의회를 말씀으로써 회장이라든가 정당협의회의 무슨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게 됩니다. 다만 사무소는 둘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사무소를 폐쇄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해 페이퍼를 준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아닌 과거의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불리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행 정당법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명기한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위원** 정당법에서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화영 위원** 37조를 좀 봐 주십시오.

정당활동의 보장, 37조(활동의 자유)에서 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정당’이라 함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한다.”라는 것을 삽입하기로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의 개념이 당원협의회 개념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37조2항에 “정당(중앙당 및 시·도당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 취지에 부합됩니다.

○**김기현 위원** 3조에 보면 아예 정당의 개념 자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중앙당하고 시·도당 외에는 정당의 개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화영 위원**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소위의 지적이었습니다. 당원협의회에서 이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지역의 당원협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막 하고 다니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당 및 시·도당을 말한다.”라고 특정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미 위원** 제가 정당법및정치자금법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확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법에서 심의를 했나요? 그런데 선거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확대”에서 합의된 안이 정개협에서 나온 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국회의원,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1번을 여성으로 한다’라는 항목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성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각 당마다 지금……

(「홀수로 되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홀수로 들어가 있나요? 그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흥길 위원** 들어가 있어요.

○**김선미 위원** 당원당규나 각 당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존 선거법에 있습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가려고요.

○**위원장 이강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 및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기현 위원** 아까 37조3항에 대해서 이상열 소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럼 자구정리·체계조정 하는 부분은 위원장, 간사, 소위원회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화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2006년 3월 12일 까지 허용하는 현행 안을……

○**위원장 이강래** 그 부분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화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미 위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홀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안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건 다 정당이 하나니까……

○**김선미 위원** 정당이 다 한다 그러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 항목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정당법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지금 김선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정당법 몇 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기수** 정당법이 아니고 선거법…… 안 33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우선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선거법이지요? 정당법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기수** 예, 맞습니다. 지금 논의사항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선미 위원** 정당법 31조인데 이번에 선거법 47조3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에 홀수라는 개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선거법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법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선거법 논의할 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김선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선미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또 다시 문제제기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정당법소위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 및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안)

(17시07분)

○**위원장 이강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당법및정치자금법소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상열** 정당법및정치자금법소위원장 이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강래 위원, 구노회 위원, 이화영 위원, 고흥길 위원, 안홍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차에 걸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정치자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의 참여와 기부를 활성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하며 법인의 후원금 기부를 계속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적 용도를 명확히 하여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등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0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

다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허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이나 법령에 위반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고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상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 9월에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그동안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라는 자문기구 설치하고 그 자문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수개월 동안 정개협의 논의를 기다려 왔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정개협의 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정치개혁특위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당법, 지금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살펴볼 것인데 과연 정개협의 안들이 자문기구안으로서의 적절한 평가를 받았는가, 그런 검토를 받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라든가 활용되었는가, 여기에도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는가……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법률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정당들이 자신의 의석수라든가 또는 득표율을 가지고 또 다시 배분에 참여

하게 되는 결과로 교섭단체 정당들이 사실상 전체 국고보조금의 상당액을 독과점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 문제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정개협에서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을 다 대상으로 하되 그 정당들이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의 50%, 지방선거의 25%, 대통령선거의 25% 등 해서 균형 있게, 형평에 맞게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국고보조금을 그에 맞추어서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런 개정안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이것이 왜 전혀 변화가 없었는지, 논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상열 노회찬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러 지적과 정개협안에서도 교섭단체 우선배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도 그 정개협안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 수차 토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정개협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다른 위원님 누가 보충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이화영 위원 정개협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신흥정당 예컨대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 그전의 투표율로 했을 경우에 국고보조금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책임정치 구현의 차원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현행의 우리 전반적인 정치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우선배정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노회찬 위원님 질의는 아마 이상열 소위원장님이 같이 하시고 싶었을 것인데…… 이화영 위원님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께서도 교섭단체에 속한 정당에 지금 계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노회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노회찬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교섭단체제도가 상식에 맞게끔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 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국회의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10명이었던 교섭단체 기준이 20명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유신시절 이전이었으면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였을 것이다, 유신체제 이후로 20명이 안 되는 당이 교섭단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두 교섭단체들은 당사도 여의도에 없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 것으로 아는데 왜 두 당에게 더 많은 비용을 쓰도록 하는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역구의 사무소도 현역의원만 갖게 하고,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가 다 가져가고, 의정보고서는 현역의원들이 계속해서 다른 현역의원 아닌 사람들보다도 사전선거운동의 특혜를 보도록 해 놓고, 모든 것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자는 것이 정치관계법 개정의 취지일진대 개정안이 그런 취지와 많이 벗어나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정 위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논의된 것에 의하면 시·도당의 후원회도 내년 3월이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 활동이 어떻게 좀더 의미 있고 활성화 될 것인가의 취지에서 바람직스럽나, 만약 현행대로 하더라도 액수를 좀 줄여서 후원금 총액, 그러니까 시·도당 후원회 총액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최소한의 시·도당 후원회를 살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또는 후원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 활동과 구별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받도록 해 놓은 것은 취지가 아주 좋다고 보는데, 정개협안에서도 당원은 될 수 없더라도 예를 들면 교사나 공무원 내지는 정당 활

동을 할 수 없는 자도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 소위에서 검토된 것은 전혀 못 하게 되었던 말입니다. 저는 소액 다수를 존중한다면 여기도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가 되었습니까?

○**소위원장 이상열**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금도 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개협안에서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후원금은 기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토의가 있었는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후원금을 허용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소위원들 전원일치로 이것은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화영 위원** 애초에 열린우리당은 찬성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기부를 허용할 경우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한 정당에, 특히 여당에게 대단히 유리한 기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반대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구노회 위원** 시·도당 후원회를 소위원회에서는 양당이 합의해서 2006년 3월 이후에도 존치시키기로 합의를 했다가 양당 간사님들께서 아마 다시 합의를 해서 폐지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기록을 위해서라도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자금이 우리당 같은 경우는 수십억에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수백억까지 발견이 됨으로써 국민들한테 정치권의 불신과 혐오 이런 것들을 낳았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을 슬립화하고 선거 때 돈 안 드는 선거를 하자, 당 운영도 돈 안 드는 당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이런



때 각 당이 자체적으로 경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때일수록 활동이 많아짐으로써 각종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도대체 불법자금을 다시 만들어서 쓸 것인지, 아니면 활동 안 하고 평상시처럼 가만히 앉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고 이 법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통과를 시켜야지, 국민들께서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이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법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지킬 수 없다,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법조문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과연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후원회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 잠시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영 위원**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현행 유지가 폐지하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12일부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가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특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후보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후보자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이 약 400억 원인데 이 400억 원을 후보자가 마련해 오라는 취지가 여기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의하면 대통령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해서 다음에 대통령선거가 다가올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저희 소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계속 존치시켜서 앞으로 있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대비를 해야 되고 대통령선거 때도 대비를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가 없어지면 굉장히 돈 많은 후보만이 돈을 잘 마련해 와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법정선거비용이 34억 원인데 선거비용을 선거 이후에 보전을 받더라도 우선 어쨌든 간에 34억 원을 자신이 먼저 마련해 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유념하셔서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애초의 동기라고도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었던 취지도 지난 대선 불법자금으로 인해서 정치자금 관련해서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개정으로 정치자금법을 지킬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권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경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우리 당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사무처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조직, 인사를 맡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근본 목적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입 부분에 대한 팽창을 막고, 그것을 동결하는 대신에 입과 발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로 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공영제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 그래서 정당의 운영은 당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 놓고 그에 맞도록 제도를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불과 1년 전에 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놓고 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존속을 한다면 정치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다 그런 측면과 또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4·15 총선 치렀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 실제로 치렀습니다. 재·보궐 선거야 국한된 선거구역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재 이 제도 가지고도 감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

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두 가지 궁극적인 방향, 소액 다수의 당비에 의해서 정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앞으로 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목표를 전제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돼 나아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근본적인 취지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화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강래 이화영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이번 소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봤고 또 각 당의 정개특위 위원 사이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그러나 각 당의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현행법은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0일까지만 존치하도록 돼 있고 오늘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내년 3월 31일 이후에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화영 위원을 비롯해서 이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의 우려는, 이번에는 대안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는 두기로 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랄지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후원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또 그다음 해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금 전에 저희 소위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예비후보 후원회는 인정치 않는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장후보의 경우는 법정선거비용의 50%에 해당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이 대안을 같음하고 대통령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일단 남겨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이화영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 추가된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화영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권경석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 합의에 의하면 후보자가 된 뒤에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회에서 법정 선거비용의 100분의 50까지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략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약 40억 원이 될 텐데 후보자가 한 20억 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아까 소위원회에서 김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후원금의 성격이 대단히 애매해집니다. 단체장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이 기초단체장 후원회를 금지하는 취지하고도 반하고 여러 가지 뇌물성, 이후에도 그것은 기부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정당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후보자가 40억 중에 20억 원을 자기 후원회로 모금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20억은 순전히 자기가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빌려 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시·도당 후원회와 중앙당 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이 전제에 너무 압도돼 가지고, 만약에 시·도당 후원회가 존속될 수 있다면 정당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가지고 그 후보를 위해서 선거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그것을 다시 정당에 귀속시키면 되는 이런 굉장히 안전하고 정치자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에게 후원을 허용하는 기형적인 부분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아주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전의 개혁 선거법, 개혁 정치관계법의 정비·개정요체는 돈을 안 들게 하고 돈을 안

반도록 하면서 공영선거제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후원회를 폐지한 것도 그런 근본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이것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만약에 손을 댄다면 그 당시 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법이 시행되어 보지도 않았습니니다. 시행 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사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당비를 모금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정당을 만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 후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대선자금이나 대통령선거자금이나 혹은 광역단체장의 선거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후원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열린우리당 측에서 그 부분만큼은 허용을 하자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저희 한나라당 측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자고 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

○**김선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래**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 관련 부분은 이쯤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말씀하십시오.

○**김선미 위원** 결국 자금 때문에 일어난 문제 같은데요.

제26조에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에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 안이 실제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2항에 보면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 원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라고만 끝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공직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을 넣어 줘야 좋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 2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것을 지급받은 중앙당은 바로 여성추천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

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것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당은 바로 추천자라든가 여성후보자들에게 받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받으면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이화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광범위한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비용의 취지로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후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기수**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정당에 주어서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위 제안을 왜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정당에서 자유롭게 여성후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대개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금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후보자들이 떨어졌을 경우에 물질적 부담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직후보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게 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선관위사무총장 답변처럼 30일로 돼 있는 것을 2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앙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필요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이신 이상열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상열** 아까 이화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중앙당에서 자율적으로 여성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또 여성후보자의 선거를 위해서 지출하는 쪽으로 해야지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위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김선미 위원님, 지금 소위에서 결정한 취지……

○**김선미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진짜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결국은 많은 여성후보자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실제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주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진입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분명하게 넣어 주었으면 하는 점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 점만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견 안 계십니까?

○**이화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거구 단위가 틀릴 경우의 후보에게는 어떻게 줄 것이며 또 정당이 전략적 집중에 관련된 측면,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전략적 집중에 관련된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성후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되 정당이 자기들 사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만약에 n분의 1로 나누어서 돈을 준다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서로의 의견을 합의하는 안으로서 최소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경비,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경비로 쓴다는 안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후보자를 위한 선거경비로 사용한다. 그것은 직접 지급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요. 후보자들에게 1대 1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추천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 사용한다.

○**위원장 이강래** 이상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소위원장 이상열** 그런 정도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저희 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그러면 이 문제는 자구수정할 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아까 한번 거론되었는데 재고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대단히 넓게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설사 당원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후원금까지를 기부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가볍게 보아서 는 아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로 고위직공무원의 여당에 대한 현금, 후원금을 내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은데 현재 정치자금법의 현실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이면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를 냈느냐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명천지에, 정치자금 낸 것 자체가 공개되는 마당에 고위직이 정치보험들듯이 특정 당, 특히 여당에 돈을 과연 낼 수 있겠는가, 많이 낼 수 있겠는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백보 양보해서 이것이 다른 부정행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이 아니라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위해서 내는 것이라면 그것까지를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막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후원금이 잘 건히지 않는 현실에서는 이런 순수한 개인들의 후원금은 장려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고위직들이 직책유지를 위해서 여당에게 내는 후원금이 쇠도할 것이다, 이에 따른 형평의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뒀을 때,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 소액현금을 내는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수십만의 공무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소액의 현금을 내고 싶은 그런 권리조차도 박탈당하는 참정권 훼손과 비교해 볼 때, 법의 상충을 비교해 봤을 때 계속 이 조항을 뒤야 될 근거는 정말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서 재론을 하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위 활동을 하셨던 이상열 위원장님 또 이화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 상호간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 당 내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재론을 해 본들 제가 볼 때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토론하

시겠습니까?

○**고흥길 위원** 종결하지요.

○**김기현 위원**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강래** 그러시면 노회찬 위원님, 다소 아쉽더라도……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 못 하지 않습니까?

○**강기정 위원** 정정해야 할 것이 열린우리당에 많은 후원금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조항이 되면 민주노동당에 많은 후원금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열린다는 것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노회찬 위원** 열린우리당이 잘하면 그리로 많이 가지요. 한나라당한테도 가고요.

○**위원장 이강래**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 및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17시43분)

○**위원장 이강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거법소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걸** 선거법소위원장 이종걸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소위원회의 경우 6월 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8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협의회의 제출안과 각 당의 의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심

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6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합의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심사내용을 법안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선거권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 한해서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신고된 직계존·비속 중 1인은 거리인사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담 토론 시 사회자는 1일 1회 교체하도록 했고 연설원은 2인 이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 의무화 등 인터넷 실명제를 보완하도록 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통령 선거는 240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120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60일 전에 하도록 하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선 선거일 7일 전부터 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의석 5석 이상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위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의석수가 같을 경우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계산방법에 따라 기호순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예컨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정기적인 학술·문화·체육

행사 등에서 상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상 등 금품제공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에는 선거구민에게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정기간행물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에 선거구당 2 내지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지역대표성, 광역의원 선거구 등 기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선거구를 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별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행보다 20% 감축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수를 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비례대표는 10%로 하고 지방의회 선거일 5개월 전까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중재기간 부여 후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인쇄물을 선거공보 1종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그 크기와 면수는 규제하되 내용이나 형식은 후보자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점자발간물은 국가부담으로 하고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토론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참 사실을 고지하는 제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등록 관련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납세, 체납증명서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연체기간 3월 이내 또는 금액 10만 원 이하의 체납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인도 개표집계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에 중복 기표된 투표도 유효로 인정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전자투표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현행 투표방식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하도록 하고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180일로 연장했습니다. 선전벽보는 현행에서 비례대표는 제외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현수막은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허용하도록 했으며 보궐선거 실시 요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금지행위 중 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며 비례대표의원 승계결정 예외사유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에 결원이 생긴 날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선거법에 대한 규제 중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가 성안해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이종걸 위원님 발표 중에는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에는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선거 예비등록기간이 300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240일로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련해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것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인구와 대표성에 대해서 각 광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각 광역권별로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 인구와 지역대표성의 기준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것

은 오늘 지방선거소위 위원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서 동의를 얻어낸 사안이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선거권 허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F5비자를 가진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해당 당사자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자는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선거인명부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부재자투표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항들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허용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지금 박형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 특히 장기체류외국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조문 정리할 때 꼭 빠지지 않도록 이종걸 소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박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26페이지 같습니다. 제60조제1항 중에 대통령선거 300일을 240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게 지금 선거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까지 전부 정당공천을 하기 때문에 각 당마다 후보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거일 전’이 아니라 ‘선거운동 개시일 전’이라고 조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면 그게……

**○김선미 위원** 그러면 15일 정도나 20일 정도가 더 되는 것이지요.

**○강기정 위원** 지방선거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김선미 위원** 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경선하는 기간을 또 제외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60일 가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거일 전’이 아닌 ‘선거운동 개시일 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지금 지방의회의원선거하고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가 60일인데 경선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자는 측면

에서 한 15일을 더 주자는 것으로…… 경선을 이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것을 ‘선거운동 시작일 전’……

**○박형준 위원**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은 지금 국회의원 예비선거일도 120일이 대단히 길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정기국회 끝나기도 전에 예비선거기간에 돌입하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사실 국정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일도 90일 전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선거를 선거운동 개시일 전 60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주장하는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 주장도 받아 주시고 그것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공개리에 토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다시 소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아까 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속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에 논의했던 사항을 박형준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형준 위원** 경선 등을 고려해서 지방선거에 한해서 “선거운동 개시일 전 60일”로 하자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저희 한나라당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형준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 불법체류의 전력이 있다든지 할 때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재자투표까지 허용해 줄 필요는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선

거운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외부재자의 투표도 허용하고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까지 허용을 하는 마당인데 외국에 살면서—재외국민—끝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그 국적을 자랑스럽게 유지하고 계신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 때문에 개정안에도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스럽게 갖고 있는 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분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법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우리 김기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아마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은 선거법소위나 지방선거소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라는 저희 당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수 20%를 감축하자는 부분인데 물론 유급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하되 급여를, 보수액을 20% 줄이는 방식으로는 검토가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10% 도입했는데 결국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나 여성과 같은 어떤 소수계층, 또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지역당을 탈

피하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의회의 경우, 물론 대개의 경우 최저인원은 7명이지만 7명에서 한 20명 좀 넘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 20%를 줄여서 1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 명 내지 두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런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10%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소위가 따로 구성돼 있었고 권오을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법 관련된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 중에……

○**박형준 위원** 제가 위원장하고……

○**위원장 이강래** 그렇습니까? 박형준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한 유급의 수준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역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유급화를 하면서 정수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민여론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의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비례대표를 많이 도입하면 좋겠습니다라는 현재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도입하기 힘들었고 또 현재 광역의원 비례대표 역시 10% 수준인데 그 이유도 광역의원수를 과거에 워낙 줄여왔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비례대표 10% 도입은 단수조정을 하고 올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약 15% 이상의 비례대표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여성들이 홀수번호에서 우선번호를 받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원칙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미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이동한 47조의 조문에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홀수로 후보자를 낸다.”라는 조항을 첨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성들이 정치권에서, 특히 지방정치에서는 생활정치로서 깨끗한 정치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것은 정말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30%라는 것은 임계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방의회나 국회에 최소한 30% 정도는 진출해 주어야만 이런 정치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는 여성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비례대표 30%를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성 30%가 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답변을 사실 또 제가 받았습니. 30% 됐을 때는 지역의원 숫자를 굉장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 지역의원 숫자가 여섯 명 정도 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경우 비례대표가 30% 되면 실제로 지역의원의 수 이런 문제에서 광역의원과의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

하지만 여성 정치의 참여 확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생활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특히 비례대표 30%를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지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회찬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말씀과 관련된 의견입니까?

○노회찬 위원 예, 이종걸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선미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하고 노회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회찬 위원 관계된 것이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강래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30% 문제를……

○김선미 위원 저는 비례대표를 10%에서 30%로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래 그전에 아까 제기했던 47조3항을 보니까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홀수에 여성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제기였지요?

○김선미 위원 예.

○위원장 이강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노회찬 위원님은 30%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지요?

○노회찬 위원 두 가지를 다하려고 했습니다만는 홀수번호는 여기서 좀 채택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강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종걸 위원 저희들은 대략 2~4인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0%를 줄인다고 할 때 보통 단위 선거구별로 비례를 1명에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2명이 제일 많고 3명과 1명이 좀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여러 당의 각 1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당의 1, 2번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는 홀수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홀수번호는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1번 홀수번호를 여성이 갖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10%에 대한 포선이 어느 정도, 대부분 10%를 1번 내지 2번이……

○위원장 이강래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 짧게 밝혀 주십시오.

○이종걸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의 경우 지역의 복수 동반 당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데……

○김선미 위원 수용하십시오.

○이종걸 위원 그래서 비례대표의 경우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저희 당의 경우 여성이 홀수번호에 배당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열린우리당은 지금 국회의원선거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간사이신 박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인기 위원 짧게 말하겠습니다.

시골의 경우에 시·군·구 중 크기가 작은 농촌은 계산상으로 비례대표 1명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주지 않으면 여성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성을 1번으로 하는 것에 지지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박형준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박형준 위원 예.
- 위원장 이강래 노회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위원 예, 만장일치입니다.
- 위원장 이강래 민주당의 이상열 위원님 어떻습니까?
- 이상열 위원 이것은 정당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강래 지금 이상열 위원님이 동의 안하시면 정회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 이상열 위원 두 사람에 1명씩 여성을 두기로 규정하고 홀수를 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강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성으로 하는 것은 47조3항에 되어 있고요, 김선미 위원 주장은 거기에다 확실하게 홀수를 여성으로 명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박형준 위원 그냥 동의해 주시지요.
- 위원장 이강래 이상열 위원님?
- 이상열 위원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이강래 그러면 이 부분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노회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정개혁이 제출한 안 중에서 가장 애석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광역비례대표의원 30% 부분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진출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나마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비례대표 30%를 함으로써 여성들의 진출을 상당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도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의원이 19%입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정수조정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현재의 광역비례대표의원 정수는 1998년 IMF를 이유로 그 당시의 정수에 비추어 30%를 줄인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일 이유는 없고 오히려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래서 현재의 광역비례대표를 10%에서 다시 30%로 늘리고 그 대신에 광역도 간의 인구편차에 따라서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들의 인구편차를 줄이

는 식으로 전체 광역의원 수를 다소 줄인다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는 19%인데 광역은 왜 계속 10%를 유지하도록 고수하셨는지, 이것을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래 박형준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에 30%를 줄였는데 광역의원 수를 현행대로 놔두고 30%를 하면 광역의원선거구하고 국회의원선거구가 동일하게 되는 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을 더 이상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광역의원 수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번에 유급화가 되기 때문에 광역의원 수를 늘리면 그 자체로 재정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처음부터 30%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광역 같은 경우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같은 경우 1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15% 내외의 비례대표의원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최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철국 위원 비례대표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공선법 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4항에 보면 100분의 5 이상 득표한 득표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회의 의원 의석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다른 정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제가 없었기 때문에 광역의원 비례대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상한선이 3분의 2로 정해

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는 최대 세 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석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다반사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석의 경우에 3분의 2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당이 세 석을 다 차지했을 경우 190조5항에 따라서 기초의회 의원도 비례대표 상한선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박형준 위원 그 부분은 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 논의 결과 기초의원 같은 경우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1명 내지 2명을 뽑기 때문에 3분의 2 규정을 두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방식에 의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할당한다는 데에 소위 차원의 합의가 있었고 그런 합의 정신에 따라 3명인 경우에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방식에 의해서 할당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철국 위원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방식이 어떤 것이지요?

○박형준 위원 국회의원은 3분의 2 규정이 없고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준 위원 그것은 조문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최철국 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방의원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원 중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상한선이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초의원도 상한선을 같이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사람이 나왔을 경우 세 사람 다 한 당에 주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적용해서 3분의 1 이상을 획득한 다수당에 두 석만 주고 나머지 한 석은 다른 당에 주는 것이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도 그리고……

○박형준 위원 두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철국 위원 두 명인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 3명인 경우에는 한 당에 세 석 다 주는 것보다는 한 당에 두 석을 주고 나머지 당에 한 석을 주는 것이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맞고 또 중대선거구

제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최철국 위원님께서 소위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헤아려 보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3개가 되는 지역이 전국에 12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일단 상한선 봉쇄조항은 두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초의원에 관련된 비례대표제 조항은 조문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상한선 봉쇄조항을 두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조항을 그대로 원용하겠다라고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가해서 우제항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우제항 위원 아까의 논의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실지로 두 명의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그것을 준용하면 두 번 자르는 데도 문제가 있고 셋 나눈 데는 기준이 있는데 12개 지역을 위해서 또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그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67% 이상을 얻으면 다 가져 가는데 한 당이 66%가 되고 다른 한 당이 34%가 되면 결국은 둘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당에서 66%를 얻고 상대편 당에서 34%를 얻으면 결국은 1대 1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화영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영 위원 실무적인 것인데,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의하면 현행법에는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즉, 교섭단체에 속한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정당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소위 합의에서는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정당도 정당 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기로 합의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박형준 위원 아니요, 지금 비교섭단체 정당의 경우에도 의석 수가 5석 이상인 정당에 한해서는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복수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기호 내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2번이면 2번 내에 ‘가, 나, 다’로 후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화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을 경우에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정당도 비워 두기로 합의하셨는데 선관위의 얘기는, 상당히 많은 정당이 창당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할 텐데 그것을 다 비워 놓으면 투표용지가 대단히 길어지는……

○**박형준 위원** 아니, 교섭단체만 비워 놓는 것이지요.

○**노희찬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합의된 것은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통일된 기호를 전국적으로 부여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러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중에서 특정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도 투표용지에는 당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조항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빠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면 이 개정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기정 위원** 기준이 전국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득표정당, 그렇지요?

○**위원장 이강래** 지역구 5석입니까?

○**노희찬 위원**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으로 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강래** 백원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아까 합의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정수 내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 주어서 비례대표 쉼터 시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규정이 저희가 합의한 내용에 있는데 그것도 조문화되어야 되거든요.

○**박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정리는, 지금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 및 관련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지금 통과된 법안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계시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기수** 존경하는 이강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정치관계법을 조기에 합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거 관리하는 데 아주 애로가 많았고, 바뀐 법을 후보자나 정당에 알리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과 같이 조기에 법을 개정해 주신 예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입법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내년도 6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관리하게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고 하니 마치 멩에를 벗은 듯 홀가분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기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합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후임자가 또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와 선거 문화가 진일보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이 사람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서 그 소임을 잘 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장인식 수석전문위원과 김종현 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간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또 행사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치 여정에 서광이 비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出席委員(17人)

강기정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김기현 김선미 노회찬 박형준  
 백원우 우제항 이강래 이명규  
 이상열 이인기 이종걸 이화영  
 최철국

○請暇委員(1人)

권오을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김종현

○政府側參席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기수

【報告事項】

○委員辭任및補任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권영세	안홍준	한나라당

(6월10일)

○議案回附

政黨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6월8일 양승조 · 엄호성 · 이강래 · 김춘진 ·

선병렬 · 장복심 · 염동연 · 우제창 · 김태홍 · 김우남 · 정병국 · 유승희 · 이광철 의원 발의)

6월9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6월15일 서병수 · 김재원 · 박재완 · 전여옥 · 권경석 · 정의화 · 정화원 · 정형근 · 허태열 · 정갑윤 · 김교홍 · 정종복 의원 발의)

6월16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6월17일 서병수 · 김재원 · 박재완 · 전여옥 · 권경석 · 정의화 · 정화원 · 정형근 · 허태열 · 정갑윤 · 김교홍 · 정종복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6월17일 이근식 · 박계동 · 엄호성 · 서재관 · 안병엽 · 유승희 · 강길부 · 최인기 · 윤원호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18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6월20일 유승희 · 김희선 · 장복심 · 이용희 · 서혜석 · 최순영 · 임종인 · 이호웅 · 손봉숙 · 이상민 · 한명숙 · 홍미영 · 이미경 · 강혜숙 · 김현미 · 김영주 · 이경숙 · 윤원호 · 장향숙 · 조배숙 · 박영선 · 이은영 · 이계경 · 이계안 의원 발의)

6월22일 회부됨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6월22일 신계륜 · 이인영 · 이화영 · 정봉주 · 우상호 · 백원우 · 문학진 · 한병도 · 이기우 · 김부겸 · 윤호중 · 최재성 · 김태년 · 임종석 의원 발의)

6월23일 회부됨